

의안
번호

5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1.

전문위원 김동성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541호

다. 제출일자 : 2025. 11. 12.

라. 회부일자 : 2025. 11. 14.

2.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북구와 경찰서 상호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안 제6조)
- 라.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9. 25. ~ 2025. 10. 15.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성북구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취지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밀착형 치안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 제도로, 2021년 6월 시행 이후 광역단위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보호 등 지역 맞춤형 치안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초단위인 성북구와 경찰서의 역할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성북구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정의)는 '자치경찰사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구청장이 지역 설정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 규정으로 인한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안 제5조(지원계획)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책과의 연계 및 구민 의견 반영, 성북·종암경찰서

장에게 협조를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구의회 등 지역 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실무협의회는 「성북구 치안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치안협의회와 연계·활용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확대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단위에서의 실질적 지원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비록 자치경찰사무는 광역자치단체 소관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2호가목¹⁾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범주에 해당하는 지원·협력 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법제처 역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 예²⁾를 제시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2)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질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를 지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상 권한 배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구 재정 여건과 광역사무인 자치경찰

원하는 내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증평군의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답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1. 7. 의견제시 14-0230 참조).

먼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시 · 도지사”가 수립하고(제1항), “시 ·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가 기본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 · 협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22 판결, 법제처 2024. 10. 29. 의견제시 24-0358, 법제처 2023. 12. 29. 의견제시 23-0333, 법제처 2018. 9. 21. 의견제시 18-0181, 법제처 2018. 9. 21. 의견제시 18-0179 참조). 또한,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치경찰사무가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사무에 대해 별도로 소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와의 역할 분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표1. 서울시 자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지 역	지자체 명
서울 (18개구)	도봉 · 금천, 강북, 강동, 서대문, 관악, 마포, 동작, 영등포, 중랑, 강서, 은평, 노원, 동대문, 양천, 종로, 강남

〈표2.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 비교〉

국가경찰사무 (법 제4조제1항제1호)	자치경찰사무 (법 제4조제1항제2호)
<p>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p> <p>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p> <p>3. 범죄피해자 보호</p> <p>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p> <p>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p> <p>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p> <p>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p> <p>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p> <p>단,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p>	<p>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p> <p>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p>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p>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p>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